

업무분장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의 제반업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 소관업무를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수부서 관련업무)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업무는 본래의 기능에 부합되거나 그 비중이 많은 부서에서 담당하고, 비중이 동일하거나 판단이 곤란할 때에는 총장이 결정한다.

제3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4조(부서내의 분장) 부서내의 개별 또는 담당자별 업무분장은 부서장이 정한다.

제2장 총장, 부총장

제1절 총장 비서실

제5조(비서실) 비서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장이 주재하는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2. 총장의 대내·외 행사 일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총장 의전에 관한 사항
4. 총장이 지시하는 사항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2절 연구윤리센터

제6조(연구윤리센터) 연구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사항
2.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사항
3.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사항
4. 생물안전관리 규정 관련 업무 수행
5. 기타 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6.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5. 입학전형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총장이 지시하는 시책사항
 7. 정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사항
 8.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신설 2022.11.1.)

제6절 브릭월 사운드(Brickwall Sound)

제11조(브릭월 사운드) 브릭월 사운드(Brickwall Sound)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계획 및 실행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습수업지침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업과 지출에 관한 사항
5.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
6. 기자재 및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
7. 운영 및 실행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8.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9.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3장 대학본부

제1절 기획처

제12조(기획평가팀) 기획평가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발전계획 및 구조개혁 방안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대학편제 및 학생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3. 직제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칙 및 제 규정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5. 규정집, 행정편람 발간에 관한 사항
6. 대학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무위원회, 기획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특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대학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10. 업무분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1. 삭제(2025.3.1.)
12. 삭제(2025.3.1.)
13. 대외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5.3.1.)
14. 기관평가인증제에 관한 사항

제3절 성신인권센터

제7조(인권상담소) 인권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권 관련 정책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인권교육 개발 및 운영, 홍보에 관한 사항
6. 학생, 직원, 교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운영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7. 성신인권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8.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4.16.)

제8조(학생생활상담소) 학생생활상담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심리상담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살 및 위기 대처를 위한 사항
4. 심리검사 실시와 해석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대학생활 및 정신건강 관련 연구 및 문헌 발간에 관한 사항
7.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8. 상담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턴십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상담전문가 양성을 위한 슈퍼비전 운영에 관한 사항
10. 온라인 상담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교수-학생 지도 관련 사항

제4절 학생군사교육단

제9조(학생군사교육단) 학생군사교육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 및 교육훈련 실시
2. 군위탁교육 장교 및 군장학생 관리
3. 군장병 홍보 및 모집

제5절 법무감사실

제10조(법무감사실) 법무감사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률업무에 관한 사항
2. 행정효율화 및 업무혁신에 관한 사항
3.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감사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획처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6.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13조(예산팀) 예산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영합리화 및 효율적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3. 등득금 책정에 관한 사항
4. 교직원 보수 책정에 관한 사항
5. 강사료 및 기타 인건비 책정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별 예산 배정에 관한 사항
7. 예산 통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예산 집행결과와 분석 및 평가
9. 재정 분석에 관한 사항
10.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11. 외부사업 대응자금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14조(사업단운영팀) 사업단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단, 사전에 특정 학과, 단과대학, 부서 등 그 운영주체가 별도로 명시된 정부재정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부재정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운영·관리·지원
2. 사업별 예산 수립 및 사업비 집행·관리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제도 정비
4. 사업의 집행 및 성과지표 모니터링
5.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6. 사업 성과의 공유와 확산
7. 사업 자체평가 관리 및 부진사항 조치계획 수립·시행
8. 사업 종합평가보고서, 연차평가 보고서 작성
9. 사업 현황 조사 및 안내
10. 정부재정지원사업 후속관리(개정 2026. 9. 1.)
11. 삭제(2026. 9. 1.)
12.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14조의2(IR센터 IR팀) IR센터 IR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 정책 개발 기초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2. 대학 성과 관리 체계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통계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고등교육 관련 외부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고등교육통계조사 총괄
6. 대학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7.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5.3.1.)

제2절 교무처

제15조(교무지원팀) 교무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2. 교원 보직 업무에 관한 사항
3. 교원 인사기록의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
4. 교·강사 신원 및 학력, 경력조회에 관한 사항
5. 교원 인사통계에 관한 사항
6. 교원 외부활동에 관한 사항
7. 교원 상벌에 관한 사항
8. 교원의 외부기관의 위임, 상훈 추천 및 검직 동의에 관한 사항
9. 교원의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
10. 교원의 외부 출장에 관한 사항
11. 교원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12. 교원 연구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3. 교수연구회 및 교수회의에 관한 사항
14. 조교 인사에 관한 사항
15. 강사위촉에 관한 사항
16. 교·강사 휴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7.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16조(학사운영팀) 학사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9.1.)

1. 학사운영팀 관련 학칙, 규정, 시행세칙 관리에 관한 사항
2. 학사운영계획(학사일정)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개혁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 편성·개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강의계획 수립 및 시간표 편성에 관한 사항
6. 졸업(학위등록·졸업대장작성)에 관한 사항
7.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
8. 학생원원 관리 및 학적관련통계 보고에 관한 사항
9. 성적평가방안 수립 및 성적관리에 관한 사항
10. 교원책임시간 및 강사 시수산출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3.9.15.)
12. 부전공, 복수전공, 융합연계전공 및 자기설계전공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6. 3. 1.)
13. 수업(휴강·보강·결강) 및 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
14. 계절수업제 운영에 관한 사항
15. 평생교육사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16. 가상강과 운영에 관한 사항
17. 국내대학 학점교류에 관한 사항
18. 학적 및 학적부 관리에 관한 사항
19. 편입생 및 체육특기자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20. 재입학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1. 미복학, 미등록, 학사경고, 제적생 처리에 관한 사항
22. 졸업논문제에 관한 사항
23. 일반강의실 교구 관리에 관한 사항

12. 중·고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3. 입학업무 관련 대외 협조에 관한 사항
14.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19조(학생지원팀) 학생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상담 지도 및 협조에 관한 사항
2. 학생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학생회 조직,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4.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관한 사항
5. 동아리 등록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학생활동 및 장소사용에 관한 사항
7. 학생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
8. 각종 게시물 관리에 관한 사항
9. 삭제(2024.4.12.)
10. 학생보험(학교경영자배상보험)운영에 관한 사항
11. 사물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온라인 학생상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3.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14. 학생후생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15. 사회·교육봉사 교과목 운영 및 학생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16. 해외봉사에 관한 사항
17. 학생축제 및 행사에 관한 사항
18. 교내강학금 업무에 관한 사항
19. 외부강학금 업무에 관한 사항
20. 국가장학금 업무에 관한 사항
21. 장학통계에 관한 사항
22. 학자금 용자에 관한 사항
23. 단과대학 교학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4. 학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5. 학생 우편물, 분실 및 습득물 관리에 관한 사항
26. 미래인재치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27.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8.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20조(성신건강복지센터 성신건강관리팀) 성신건강복지센터 성신건강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응급 및 일반 치료에 관한 사항
2. 전문의 진료에 관한 사항
3. 건강상담 및 건강교육에 관한 사항
4. 학생 건강검사에 관한 사항
5. 교직원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6.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7. 약품 및 의료기구 구입, 관리에 관한 사항
8. 성신건강관리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전과(소속변경) 및 전공 변경에 관한 사항
25. 학력조회에 관한 사항
26. 학사경고 및 학사제적 조치에 관한 사항
27. 외국인 유학생 학적 및 학사정보 관리 사항
28. 편입학 여식 산출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29. 이수구분정정 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0. (삭제 2022.9.1.)
31. (삭제 2022.9.1.)
32. (삭제 2022.9.1.)
33. (삭제 2022.9.1.)
34. 입학식 및 학위수여식 진행에 관한 사항
35. 학사 관련 증명서 발급(기)에 관한 사항
36. 교·강사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37. 유교결식 제도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8. 학적변동(휴학, 복학, 자퇴) 제도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9. 교무직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개정 2022.9.1.)
40.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1.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17조(교직과) 교직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직 관련 학칙, 규정, 시행세칙 관리에 관한 사항
 2. 교직 교육과정 편성·개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직 부전공·복수전공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전문신설 2023.9.15.)

제3절 미래인재처

제18조(입학관리실) 입학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입시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입학전형제도 연구 및 기획에 관한 사항
3. 신입학 전형에 관한 사항
4. 편입학 전형에 관한 사항
5.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 제외)(개정 2024.3.1.)
6. 입시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입시서버 보안계획수립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8. 입학 홍보 및 설명회, 상담에 관한 사항
9. 입학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전형통계에 관한 사항
11. 입학사정관 교육에 관련된 사항

9. 간호학과 실습 교육에 관한 사항
10. 기타 건강관리 및 성신건강관리팀 운영에 관한 사항
11. 성신건강복지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2.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21조(성신건강복지센터 기숙사) 성신건강복지센터 기숙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숙사 사생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3.9.1.)
2. 입사 및 퇴사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숙사 수직 관리 및 생활 태도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생회 및 인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오리엔테이션, 화재 예방 소방 훈련, 건강 교육, 응급상황 대비 안전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6. 기숙사 시설 점검 및 관리 보수, 정기소독, 위생 상태 관리, 안전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3.9.1.)
7. 기숙사 운영 수입 및 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개정 2023.9.1.)
8. 기숙사 관련 정보공시, 통계에 관한 사항
9. 소관부서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10.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22조(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팀)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12.16., 2024.4.12)

1. 장애학생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의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
6.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4절 국제대외협력처

제23조(대외협력홍보팀) 대외협력홍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UI(University Identity)홍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언론홍보에 관한 사항
3. 입시홍보에 관한 사항
4. 광고홍보에 관한 사항
5. 홍보물제작에 관한 사항
6. 기념품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포터스(학생홍보대사)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홈페이지 포커스 및 총장동정 게시에 관한 사항

- 8의2. 교내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1.6.18.)
9. 교내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10. 각종 행사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11. 각종 홍보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국내 교류 협정 체결 현황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3. 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14.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24조(국제교류지원팀) 국제교류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4.18.)
1. 국제와 관련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및 진행에 관한 사항
3. 국외 교류대학간 교수교환, 학생 교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국제교류 행사 추진계획 수립 및 진행에 관한 사항
5. 교환학생 해외파견에 관한 사항
6. 단기연수생 해외파견에 관한 사항
7. 국외교류대학의 외국인 교환학생·복수학위생 선발에 관한 사항
8. 국제학술교류협정을 위한 홍보물 제작
9.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자료 지원
10. 국제교류 및 외국인유학생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제외국인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에 한함)(신설 2024.3.1.)
12.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정보시스템(FIMS)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 유학생 학적, 장학, 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 유학생 O/T에 관한 사항
16. 기숙사 거주 국제학생 의사소통, 긴급사항 발생 시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3.9.1.)
17.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보함에 관한 사항
18.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19.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상담에 관한 사항
20.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활동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21.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22. 외국인 유학생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23.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4. 외국인 유학생 학생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25. 국제학부 발전 계획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6. 국제학부 교수회의에 관한 사항
27. 국제학부 행사 및 특강 운영에 관한 사항
28. 국제학부 교육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29. 국제학부 학부장 추천서 발급에 관한 사항
30. 국제학부 유교결석 처리에 관한 사항
31. 국제학부 학적변동(휴학, 복학, 자퇴) 처리에 관한 사항
32. 국제학부 교육용 실험실습기자재 관리 현황에 관한 사항

19. 교직원 경조사에 관한 사항
20. 교직원자녀 학자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21. 교직원 상조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2. 노동조합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23. 퍼트니스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4.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25. 관리처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26. 경비원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7. 비상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8. 차량운행 및 주차관리에 관한 사항
29. 학교 행사진행 및 의전에 관한 사항
30. 담당자별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31. 장애인, 불온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32. 직권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33. 공익근무업무에 관한사항
34.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35. 교직원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
36. 직장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
37. 예비군 관리 및 인력동원 후위책정에 관한 사항
38.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총장, 총무처장, 직장민방위대장의 직인)
39.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40. 사학연금,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1.1)
41. 교직원공제회에 관한 사항(신설 2023.11.1.)
42.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3.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27조(재무회계팀) 재무회계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2. 자금집행계획 수립 및 예치관리에 관한 사항
3. 자금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유가증권 취급에 관한 사항
5. 급여 및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
6. 세무에 관한 사항
7. 수납 및 출납에 관한 사항
8. 차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
9. 각종 회계대장 및 장부관리에 관한 사항
10. 각종 결산 재무제표 작성보고에 관한 사항
11. 결산감사 수검에 관한 사항
12. 재무·회계관련 통계작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3. 법인 카드 관리에 관한사항
14.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삭제(2023.11.1.)
16. 삭제(2023.11.1.)

33. 각종 평가 및 통계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34.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5. 국제대외협력처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36.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25조(국제교육원) 국제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1.)

1. 국제교육원 운영 계획 및 실행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제교육원 소속 교원 임면에 관한 사항
3. 국제교육원 교육과정 강의 위탁계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한국어 강사 위탁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
5. 국제교육원 시설 및 기자재 관리사항에 관한 사항
6. 한국어학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한국어학당 정규과정 외국인 어학연수생 유치 및 선발에 관한 사항
8. 한국어 학당 단기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9. 외국어학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신입생 및 재학생 외국어 특화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교내 성신토의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12. 세종학당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국제교육원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4.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5절 총무처

제26조(인사총무팀) 인사총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2. 직원 인사기록의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
3. 직원 상벌에 관한 사항
4. 인사통계에 관한 사항
5. 직원 신원 및 경력조회에 관한 사항
6. 직원 근태에 관한 사항
7.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직원 출장명령에 관한 사항
9. 대내·외 문서 통제에 관한 사항
10. 삭제(2025.6.13.)
11. 문서 및 우편물 수발에 관한 사항
12. 삭제(2020.6.1.)
13. 삭제(2020.6.1.)
14. 교직원 단체상해보험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20.6.1.)
16. 구매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7.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18. 교직원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17. 삭제(2023.11.1.)
18.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28조(건축시설팀) 건축시설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4.15.)

1. 학교재산유지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2. 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3. 건설사업의 학교부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4. 건설사업에 수반하는 시공, 검수, 검측, 준공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건설사업에 수반하는 설계, 감리 등 용역감독에 관한 사항
6. 건설사업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
7. 건설사업의 측량에 관한 사항
8. 건설사업의 공사용 시공도면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9.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전기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위험물 취급에 관한 사항
14. 가스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기능직원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16. 미화, 영선 용역관리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7. 비품관리 및 검수에 관한 사항
18. 시설사용 및 공간배정에 관한 사항
19. 시설관련 대학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20.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1.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29조(운영캠퍼스통합지원팀) 운영캠퍼스통합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4.18.)

1. 학사 관련 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수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증명발급기 관리에 관한 사항
4. 일반강의실 수업용 기자재관리, 대여에 관한 사항
5. 대내·외 문서 및 우편물 수발에 관한 사항
6. 학생업무 및 학생활동에 관한 사항
7. 장학 및 봉사 관련 서류 검수에 관한 사항
8. 학생후생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9. 사업장 폐기물 및 방역에 관한 사항
10. 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11. 주차관리에 관한 사항
12. 시설 내·외부 태권에 관한 사항
13.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4. 기능직원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15.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16. 연구실 현장안전관리 운영·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17. 유전자변형생물체(LMO)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8. 실험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19. 조정·환경미화 및 청소 감독에 관한 사항
20.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21. 소방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22.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3.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30조(안전팀) 안전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4.18.)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법정 안전검사 시행 및 안전관리 현황 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실사고 사전 대응 및 보상에 관한 사항
7. 안전보건 관련 통계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
8.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2.4.15.)

제6절 진로취업처

제31조(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인제개발팀) 인제개발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진로·취업 교과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진로·취업 비교과, 멘토링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과(부) 맞춤형 진로·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6. 교직원 대상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학생진로종합시스템 SunShine 운영에 관한 사항
8. 진로·취업 관련 자료 제작에 관한 사항
9. 정부·지자체 청년고용정책 지원사업 연계에 관한 사항
10. 조기취업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11.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통합 고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
13.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2.9.1.)

제32조(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청년고용거버넌스팀) 청년고용거버넌스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 사업 또는 지자체 연계형 사업에 관한 사항
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직무(취업)박람회 등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관련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제감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5. 통합상담(진로·취업·기초심리)에 관한 사항

제35조(연산지원팀) 연산지원팀은 연구산학협력단의 정관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4.3.1.)

1. 교내·외 연구과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비 정산감사 수검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활성화 지원비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부재정지원사업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사항
5. 정관 및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6.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36조(구매팀) 구매팀은 연구산학협력단의 정관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4.3.1.)

1. 구매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3. 분야별 통계 및 정보공시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 및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5.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37조(연산사업단운영팀) 연산사업단운영팀은 연구산학협력단의 정관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4.3.1.)

1. 정부재정지원사업 수주·관리·시행 및 사업단 파제관리에 관한 사항
2. 최신 대학연구 (국책)사업분야 동향·역량 파악에 관한 사항
3. 사업단 구성 연구과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 행사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분야별 통계 및 정보공시 관리에 관한 사항
6. 정관 및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7.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38조(창업지원센터 창업지원팀) 창업지원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업친화적 학제 구축에 관한 사항
2. 창업 교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창업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확대에 관한 사항
4. 창업동아리 발굴 및 동아리창업아이템 사업화에 관한 사항
5. 창업캠프, 창업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6. 창업 장학금에 관한 사항
7. 정부재정지원사업 창업 관련 사업계획 기획 및 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8. 제7호 사업운영에 대한 성과지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창업자의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10. 창업자의 사업화 후속지원에 관한 사항
11. 정신유니콘센터 창업자 공간지원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2. 정부재정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3. 자율특화프로그램(비교과)의 개발·보급 및 확대에 관한 사항
14.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투자 데모데이 프로그램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일자리 매칭에 관한 사항
7. 잡카페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2.9.1.)

제33조(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운영팀) 현장실습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장실습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 기업 발굴 및 협약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 기업 관리에 관한 사항
4. 현장실습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5. 현장실습교육에 관한 사항
6. 현장실습 수행 점검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7. 학생 평가 및 학점인정 관리에 관한 사항
8. 현장실습 운영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9. 현장실습 및 인턴십 등 산학협력 신규사업 및 정부재정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10.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2.9.1.)

제7절 연구산학협력단

제34조(연산기획평가팀) 연산기획평가팀은 연구산학협력단의 정관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산학협력단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대외기관 및 기업협력에 관한 사항
3. 교내·외 연구과제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인사 및 재산유지 보존에 관한 사항
6. 대외기관 평가 및 실태조사 대응에 관한 사항
7.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9. 산업자문 관리에 관한 사항
10. 비밀유지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1. 정부재정지원사업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사항
12. 재무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13. 산학협력사업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14. 산학연구행정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5. 분야별 통계 및 예결산 정보공시 관리에 관한 사항
16. 정관 및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17.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전문개정 2024.3.1.)

16. 연합 프로그램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창업자 및 외부기관 네트워크 관리에 관한 사항
18. 창업지원센터 홍보에 관한 사항
19.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3.3.17)

제39조(중앙실험지원센터 중앙기기실) 중앙기기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 12. 18.)

1. 중앙기기실 계획 수립 및 운영
2. 연구기자재 및 실험기기·기구의 관리
3. 위탁실험 및 실험교육 계획 및 운영
4. 국가연구 시설·장비의 관리
5. 연구장비 사용료의 청구 및 예산 집행
6.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39조의2(중앙실험지원센터 실험동물실) 실험동물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실험동물실 계획 수립 및 운영
2. 실험동물실 시설·장비 관리
3. 실험동물 관리 지원(공급, 사육, 검역, 감염예방, 순화, 사체관리 등)
4. 실험동물 기술 및 교육 지원
5. 실험동물실 사용료의 청구 및 예산 집행
6.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12. 18.)

제8절 교육혁신원

제40조(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팀) 교수학습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수학습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원격수업(MOOC 포함)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수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원격수업(MOOC 등 포함) 콘텐츠 개발·운영 지원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6. 융합수업(하이브리드 수업 등 포함) 수업 개발, 평가 및 관류에 관한 사항
7. 학습관리시스템(LMS) 및 플랫폼(MOOC 플랫폼 등 포함) 운영에 관한 사항
8. 교수학습을 위한 교육환경 구축 및 교육매체 지원에 관한 사항
9. 일반강의실 공통 수업용 전자기자재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10. 센터 소속 특수강의실 및 스튜디오 관리 및 대여에 관한 사항
11. 교수학습 프로그램 성과 및 질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12.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평가 및 관류에 관한 사항
13. 교육혁신원장 및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4.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전문개정 2025.3.1.)
- 제41조(교육과정혁신팀) 교육과정혁신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과·교육과정 발전 방안 연구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과·교육과정 개선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과·교육과정 점검 및 질 관리에 관한 사항

4. 비교과·교육과정 수요 및 성과, 체계의 연구·기획·환류에 관한 사항

5. 비교과 교육과정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6. S+마일리지 및 S+마일리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핵심 비교과 교육과정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전문개정 2025.3.1.)
- 제42조 삭제(2025.3.1.)
- 제43조 삭제(2025.3.1.)
- 제44조(교육성과관리팀) 교육성과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핵심역량 진단 및 인증, 성과지표 개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개발, 시행, 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4. 교육 성과 및 질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5. 재학생 핵심역량 강화 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

6. 강의평가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전문개정 2025.3.1.)
- 제45조 삭제(2025.3.1.)

제9절 학술정보원

- 제46조(디지털혁신센터 IT운영팀) 디지털혁신센터 IT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1.8.17.)
1. 정보화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스템 전산장비 도입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내·외 전산망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정보보안 정책 수립 및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6. 시스템 정보 및 재난복구 관리에 관한 사항

7. IT인프라 구축 및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술적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9. 학교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정보화 교육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1.8.17.)

5. 교양 수업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양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

7. 창의융합대학 교수회의 및 교원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8. 창의융합대학 행사 및 특강,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9. 창의융합학부 신입생 교육과정 및 비교과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10. 창의융합학부 신입생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11. 학장 추천서 발급에 관한 사항

12. 소속 교육을 실험실습기자재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3. 창의융합대학장 직인 관수에 관한 사항

14. 창의융합대학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15. 창의융합대학 관련 규정, 시행세칙 관리에 관한 사항

16.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2.9.1.)(전문 개정 2023.9.15.)

제5장 대학원(개정 2026. 3. 1.)

- 제50조(대학원 교학팀) 대학원 교학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과(전공) 신설, 폐지, 변경 및 학생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2.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등 대학원 관련 각종 규정에 관한 사항

3.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4. 학사보고 및 각종 통계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5. 입학업무에 관한 사항

6. 학·석사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학적변동, 학적부 및 개인 파일 관리에 관한 사항

8. 성적관리에 관한 사항

9.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10. 수업에 관한 사항

11. 교육대학원 교직 업무에 관한 사항

12.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3.10.20.)

13. 학위청구 논문에 관한 사항

14. 학위등록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15. 장학업무에 관한 사항

16. 취업지원 및 각종 추천에 관한 사항

17. 학과(전공)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18. 학력조회에 관한 사항

19.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20. 대학원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21. 원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2. 각 대학원장 직인 관수에 관한 사항(개정 2026. 3. 1.)

23.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11. 전산실습실 및 PC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1.8.17.)

12.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목개정 2021.8.17.)
- 제47조(중앙도서관 학술정보팀) 학술정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자료 구입 및 기증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 검수, 등록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자료 분류, 편목, 장비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열람 및 대출·반납에 관한 사항

6. 장서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홍보 및 행사에 관한 사항

8. 도서관 이용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9. 학술자료 교류협정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 정보환경 구축과 관리에 관한 사항

11. 삭제(2025.6.1.)

12. 중앙도서관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3.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전문개정 2021.4.16.)

제4장 대학

제48조(대학 교학팀) 대학 교학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단과대학 발전 계획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단과대학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단과대학 교수회의에 관한 사항

4. 단과대학 행사 및 특강 운영에 관한 사항

5. 단과대학 교육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장 추천서 발급에 관한 사항

7. 유교결식 처리에 관한 사항

8. 학적변동(휴학, 복학, 자퇴) 처리에 관한 사항

9. 교육용 실험실습기자재 관리 현황에 관한 사항

10. 실기대회 입상실적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11. 단과대학장 직인 관수에 관한 사항

12.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49조(창의융합 교학팀) 창의융합 교학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12.26., 2025.3.1)

1. 교양과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양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창의융합대학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창의융합대학 강의계획 수립 및 강의시간표 편성에 관한 사항

제6장 부설연구소

제51조(부설 연구소) 각 연구소는 각 연구소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사무수행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제7장 부속기관

제1절 박물관

제52조(박물관)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정책, 제도,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소장품 수집,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3. 전시실 및 수장고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시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5. 소장품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학술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

7.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8. 기록물 관리 정책, 제도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학교사기록물 수집, 보존, 활용, 편찬에 관한 사항

10. 기록물 분류체계 관리에 관한 사항

11.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2.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운영 및 기록물 평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13. 학교사전시실 및 수장고(보존서고) 관리에 관한 사항

14. 성신아카이브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15. 도서관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6. 박물관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7.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전문개정 2025.5.16.)

제2절 평생교육원

제53조(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일정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규 교과과정 설치 및 원생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3. 수업진행에 관한 사항

4. 최고전문가 과정 운영

5. 민간자격증 과정 운영
6. 국가자격증 대비과정 운영
7. 학점은행제 교과목 운영
8. 원생 원부 관리에 관한 사항
9. 감사초빙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11. 각종 통계, 문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3. 수강생 모집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14. 협력기관과의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15. 평생교육원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6.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3절 성신미디어

- 제54조(성신미디어) 성신미디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12.16.)
1. 국문·영문 학보 발행 및 배포에 관한 사항
2. 정기 간행물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생기자·학생방송국원 선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교내 방송 보도에 관한 사항
5. 각종 방송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6.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목개정 2022.12.16.)

제4절 SWANS센터

- 제55조(SWANS센터) SWANS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계획 및 실행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3. 실습수업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입 및 지출처리에 관한 사항
5.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
6. 기자재 및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
7. 운영 및 실행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8.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9.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부 칙

- 부 칙
-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개정 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개정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개정 규정은 1995년10월2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 제15조의2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른 규정의 개정) 직제규정 및 업무분장규정 변경으로 인한 제 규정의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8.3.1)

규정명	관련조항	~을	~으로
규정류 관리규정	제9조(주관부서)	기획예산팀	기획팀
물품구매 및	제3조(업무구분)	기획예산팀	예산팀
시설시설공사계약규정	제4조(청구절차)	기획예산팀	예산팀
교무위원회 규정	제5조(서기)	기획예산팀	기획팀
내무감사규정	제23조(사무직원)	기획평가팀	기획팀
학사규정	제35조(추가시험)	교무팀	학사지원팀
교원윤리위원회규정	제16조(간사)	교무팀	교무연구지원팀
	제17조(주관부서)	교무팀	교무연구지원팀
학사규정	제17조(학생명단통보)	학작팀	학사지원팀
	제28조(취득성적 취소신청)	학작팀	학사지원팀
	제42조(성적처리)	학작팀	학사지원팀
	제44조(성적정정)	학작팀	학사지원팀
	제47조(성적표배부)	학작팀	학사지원팀
	제53조(결차)	학작팀	학사지원팀
	제56조(복학)	학작팀	학사지원팀
	제58조(졸업)	학작팀	학사지원팀
	제59조(퇴학결차)	학작팀	학사지원팀
	제60조(퇴학자의 재입학)	학작팀	학사지원팀
	제84조(발급절차)	학작팀	학사지원팀
	제53조(서기)	학작팀	학사지원팀
	제53조(서기)	학작팀	학사지원팀
	제53조(장급 및 기금운용관리 책임자)	연구지원팀	교무연구지원팀
	제9조(배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연구지원팀	교무연구지원팀
	제22조(기록의 보존 및 공개)	연구지원팀	교무연구지원팀
	별표 심의절차	연구지원팀	교무연구지원팀
교원협정에 관한 규정	제3조(협정제결절차)	연구처	대의협력처
	제3조(협정제결절차)	연구처장	대의협력처장
	제9조(업무관리)	연구처	대의협력처
교원연구년제도에 관한 규정	제8조 (연구년 신청절차 및 선정)	연구처장	교무처장
	제9 조 (연구년통)	연구처장	교무처장
	제15조 (주관)	연구처	교무처
교원인적평가 규정	별표1 영역별 평가항목 및 배점	연구처	교무처
교내연구비관리규정	제10조(비품등의 귀속)	연구처	교무처
	제12조(시행세칙)	연구처장	교무처장
이세종박사 학술진흥	제3조(관리)	연구처	교무처

규정명	관련조항	~을	~으로
연구비 관리규정	제12조(연구비신청)	연구처	교무처
	제12조(실행예산지 및 연구계획변경시 제출)	연구처	교무처
	제16조 (연구비의 청산)	연구처	교무처
	제17조 (출납장 및 재학생 해외연수비 지원)	연구처	교무처
장산글로벌여성리더 교비지원유학에 관한 시행세칙	제4조(선발)	연구처장	대외협력처장
자율연구소 및 연구모임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설치절차)	연구처	교무처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 칙<2015.09.16. 2015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2.19. 2015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9.21. 2016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6.21. 2017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3.09. 2018학년도 제1차 정기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4.20. 2018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단, 제25조(대학교학팀)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9.07. 2018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3.29. 2019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7조의 삭제 및 신설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른 규정의 개정) 직제규정 및 업무분장규정 변경으로 인한 제 규정의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7.1)

규정명	관련조항	~을	~으로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구성)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정	제3조(기능)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4.19. 2019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9.20. 2019학년도 제8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 칙<2019.11.22. 2019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1.21. 2019학년도 제1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2.21. 2019학년도 제1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 칙<2020.05.15. 2020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7.17. 2020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4.16. 2021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사항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6.18. 2021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8.17. 2021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0.08. 2021학년도 제8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4.15. 2022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8.19. 2022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9.23. 2022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16. 2022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부터 제50조는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3.17. 2023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4.14. 2023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5.19. 2023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8.18. 2023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9.15. 2023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0.20. 2023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0.20. 2023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1.19. 2023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2.14. 2023학년도 제1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3.15. 2024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8조의 2(경미한 수정사항)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4.12. 2024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8조의 2(경미한 수정사항)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2.20. 2024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1.17. 2024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8조의 2(경미한 수정사항)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4.18. 2025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24조의 개정사항은 202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5.16. 2025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5.16 2025학년도 제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6.13 2025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8조의 2(경미한 수정사항)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12. 12. 2025학년도 제9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8조의 2(경미한 수정사항)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 8. 14. 2026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